

목 차

정 관	1
-----------	---

정 관

第1章 總則

第1條(商號) 이 會社는 韓國輸出包裝工業株式會社라 말한다.英文으로는 KOREA EXPORT PACKAGING INDUSTRIAL COMPANY LIMITED(略號 KEP)라 表記한다.第2條(目的) 이 會社는 다음의 事業을 經營함을 目的으로 한다.① 商品包裝業② 골板紙 및 골板紙箱子 製造業③ 크라프트 라이너紙 및 골芯紙 製造業④ 非鐵 金屬製造業⑤ 輸出入業⑥ 鑛山 및 林野開發業⑦ 不動產賣買 및 賃貸業⑧ 駐車場運營業⑨ 保管 및 倉庫業⑩ 百貨店과 스포츠레저施設의 設置 및 運用事業⑪ 前 各號에 附帶하는 事業

第3條(本店의 所在地 및 支店의 設置) ① 이 會社는 本店을 서울特別시에 둔다.② 이 會社는 必要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로 支店을 둘 수 있다.

第4條(公告方法) 이 會社의 公告는 會社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ppack.co.kr>)에 掲載한다. 다만 電算障碍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事由로 會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告를 할 수 없을 때에 서울特別市에서 發行되는 韓國經濟新聞에 掲載한다.第2章 株式

第5條(發行豫定株式의 總數) 이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는 12,000,000株로 한다.第6條(壹株의 金額) 이 會社가 發行하는 株式 壹株의 金額은 5,000원으로 한다.

第7條(設立시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 이 會社가 設立시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는 壹萬株로 한다.

第8條의 1(株式의 種類) 이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種類는 記名式 普通株式과 記名式 優先株式으로 한다.

第8條의 2(優先株式의 數와 內容) ① 이 會社가 發行할 優先株式은 議決權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發行株式의 數는 650,000株로 한다.② 優先株式에 對하여는 額面 金額을 基準으로하여 年 9% 以上 12% 以內에서 發行시에 理事會가 優先配當率을 定한다.③ 普通株式의 配當率이 優先株式의 配當을 超過할 境遇에는 그 超過分에 對하여 普通株式과 同一한 比率로 參加시켜 配當한다.④ 優先株式에 對하여 어느 事業年度에 있어서 所定の 配當을 하지 못한 境遇에는 累積된 未配當分을 다음 事業年度의 配當時에 優先하여 配當한다.⑤ 優先株式에 對하여 所定の 配當을 하지 아니한다는 決議가 있는 境遇에는 그 決議가 있는 總會의 다음 總會부터 그 優先的 配當을 한다는 決議가 있는 總會의 終了時까지는 議決權이 있는 것으로 한다.⑥ 이 會社가 有償增資 또는 無償增資를 實施하는 境遇 優先株式에 對한 新株의 配當은 有償增資의 境遇에는 普通株式으로 無償增資의 境遇에는 그와 같은 種類의 株式으로 한다.⑦ 優先株式의 尊屬期間은 發行日부터 10年으로 하고 이 期間滿了와 同時에 普通株式으로 轉換된다. 그러나 위 期間中 所定の 配當을 하지 못한 境遇에는 所定の 配當을 完了할 때까지 그 期間을 延長한다. 이 境遇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하는 株式에 對한 利益의 配當에 關하여는 第10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9條(株券의 種類) 이 會社가 發行할 株券의 種類는 壹株券, 五株券, 壹拾株券, 五拾株券, 壹百株券, 五百株券, 壹仟株券, 壹萬株券의 8種으로 한다.

第10條의 1(新株引受權) ① 이 會社의 株主는 新株發行에 있어서 그가 所有한 株式數에 比例하여 新株의 配當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그러나, 株主가 新株引受權을 拋棄 또는 喪失하거나 新株配當에서 端株가 發生하는 境遇에 그 處理方法은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② 理事會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理事會의 決議로 株主外의 者에게 新株를 配當할 수 있다.1. 證券去來法의 規定에 依하여 新株를 募集하거나 引受人에게 引受하게 하는 境遇2. 資本市場育成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우리 社株組合員에게 新株를 優先配當하는 境遇3. 海外證券發行規定에 依하여 株式預託證書(DR) 發行에 따라 新株를 發行하는 境遇

第10條의 2(新株의 配當起算日) 會社가 有償增資, 無償增資 및 株式配當에 의하여 新株를 發行하는 境遇 新株에 대한 利益의 配當에 關하여는 新株를 發行한 時가 屬하는 營業年度의 直前 營業年度末에 發行된 것으로 본다.

第11條(名義改書代理人) ① 이 會社는 株式의 名義改書代理人을 둔다. ② 名義改書代理人 및 그 事務取扱場所와 代行業務의 範圍는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 ③ 이 會社는 株主名簿 또는 그 複本을 名義改書 代理人의 事務取扱場所에 備置하고 株式의 名義改書, 質權의 登錄 또는 抹消, 信託財産의 表示 또는 抹消, 株券의 發行, 申告의 接受, 其他 株式에 關한 事務는 名義改書代理人으로 하여금 取扱케 한다. ④ 第3項의 事務取扱에 關한 節次는 名義改書 代理人의 有價證券의 名義改書 代行 等に 關한 規定을 따른다.

第12條(株主 等의 住所, 姓名 및 印鑑 또는 署名등 申告) ① 株主와 登錄質權者는 그 姓名, 住所 및 印鑑 또는 署名 등을 第11條의 名義改書 代理人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外國에 居住하는 株主와 登錄質權者는 大韓民國內에 通知를 받을 場所와 代理人을 定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變動이 생긴 境遇에도 같다.

第13條(株主名簿의 閉鎖 및 基準日) ① 이 會社는 每年 1月 1日부터 1月 31日까지 權利에 關한 株主名簿의 記載 變更을 停止한다. ② 이 會社는 每年 12月 31日 最終의 株主名簿에 記載되어 있는 株主를 그 決算期에 關한 定期株主總會에서 權利를 行使할 株主로 한다. ③ 이 會社는 臨時株主總會의 召集 其他 必要한 境遇 理事會의 決議로 3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는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權利에 關한 株主名簿의 記載變更을 停止하거나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 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되어 있는 株主를 그 權利를 行使할 株主로 할 수 있으며,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株主名簿의 記載變更 停止와 基準日의 指定을 함께 할 수 있다. 會社는 이를 2週間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3章 社債

第14條(轉換社債의 發行) ① 이 會社는 社債의 額面總額이 1,000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株主外의 者에게 轉換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轉換社債에 있어서 理事會는 그 一部에 대하여만 轉換權을 賦與하는 條件으로 이를 發行할 수 있다. ③ 轉換으로因하여 發行하는 株式은 普通株式으로 하고 轉換價額은 株式의 額面金額 또는 그 以上の 價額으로 社債發行時 理事會가 定한다. ④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은 當該 社債의 發行日後 1個月이 經過하는 날로부터 그 償還期日의 直前日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期間內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서 轉換請求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 ⑤ 轉換으로因하여 發行하는 株式에 대한 利益의 配當과 轉換社債에 대한 利子의 支給에 關하여는 第10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5條(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① 이 會社는 社債의 額面總額이 1,000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株主外의 者에게 新株引受權附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② 新株引受를 請求할 수 있는 金額은 社債의 額面總額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理事會가 定한다. ③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發行하는 株式은 普通株式으로 하고 그發行價額은 額面金額 또는 그 以上の 價額으로 社債發行時 理事會가 定한다. ④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은 當該 社債發行日後 1個月이 經過하는 날로부터 그 償還期日의 直前日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期間內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서 新株引受權의 行使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 ⑤ 新株引受權의 行使로인하여 發行하는 株式에 대한 利益의 配當에 關하여는 第10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6條(社債發行에 關한 準用規定) 第11條, 第12條 規定은 社債 發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4章 株主總會

第17條(召集時期) ① 이 會社의 株主總會는 定期株主總會와 臨時株主總會로 한다. ② 定期株主總會는 每事業年度 終了後 3月以內에 臨時株主總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第18條(召集權者) ① 株主總會의 召集은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代表理事社長이 召集한다. ② 代表理事社長이 有故時에는 第34條의 1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9條(召集通知 및 公告) ① 株主總會를 召集함에는 그 日時, 場所 및 會議의 目的事項을 總會日 2週間前에 各 株主에게 書面으로 通知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1以下の 株式을 所有한 株主에 대한 召集通知는 2週間前에 株主總會를 召集한다는 뜻과 會議의 目的 事項을 서울特別市에서 發行하는 韓國經濟, 每日經濟新聞에 2回以上 公告하거나 金融監督院 또는 韓國去來所가 運用하는 電子公示시스템에 公告함으로써 第1項의 召集通知에 갈음할 수 있다.

第20條(召集地) 株主總會는 本店所在地에서 開催하되 必要에 따라 이의 隣接地域에서도 할 수 있다.

第21條(議長) ① 株主總會의 議長은 代表理事社長으로 한다. ② 代表理事社長이 有故時에는 第34條의1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2條(議長の 秩序維持權) ① 株主總會의 議長은 그 株主總會에서 故意로 議事進行을 妨害하기 위한 言行을 하거나 秩序를 紊亂케 하는 者에 대하여 그 發言의 停止, 取消 또는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을 받은 者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 株主總會의 議長은 議事進行의 圓滑을 期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株主의 發言의 時間 및 回數를 制限할 수 있다.

第23條(株主의 議決權) 株主의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第24條(相互株에 대한 議決權制限) 이 會社, 母會社 및 子會社 또는 子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分の 1을 超過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會社가 가지고 있는 이 會社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

第25條(議決權의 不統一行使) ① 2以上の 議決權을 가지고 있는 株主가 議決權의 不統一行使를 하고자 할 때에는 會日의 3日前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뜻과 理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 會社는 株主의 議決權의 不統一行使를 拒否할 수 있다. 그러나 株主가 信託을 引受하였거나 기타 他人을 위하여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6條(議決權의 代理行使) ①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代理人은 株主總會 開始前에 그 議決權을 證明하는 書面(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27條(株主總會의 決議方法) 株主總會의 決議는 法令에 다른 定함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로 하되 發行株式總數의 4分の 1以上の 數로 하여야 한다.

第28條(株主總會의 議事錄) 株主總會의 議事는 그 經過의 要領과 結果를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하여 本店과 支店에 備置한다. 第5章 理事?理事會?監事

第29條(理事 및 監事の 數) ① 이 會社의 理事는 3名 以上 8名 以內로 하고, 社外理事는 理事總數의 4分の 1 以上으로 한다. ② 이 會社의 監事は 1名 以上, 2名 以內로 한다. 그 중 1名 以上은 常勤으로 하여야 한다.

第30條(理事 및 監事の 選任) ① 理事와 監事は 株主總會에서 選任한다. ② 理事와 監事の 選任은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로 하되 發行株式總數의 4分の 1以上の 數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監事の 選任에는 議決權없는 株式을 除外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3을 超過하는 數의 株式을 가진 株主는 그 超過하는 株式에 關하여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③ 理事 選任時 商法 382條의 2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1條(理事 및 監事の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그러나, 그 任期가 最終의 決算期 終了後 當該決算期에 關한 定期株主總會 前에 滿了될 경우에는 그 總會의 終結時까지 그 任期를 延長한다. ② 監事の 任期는 就任後 3年內의 最終의 決算期에 關한 定期株主總會 終結時까지로 한다.

第32條(理事 및 監事の 補選) ① 理事 또는 監事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株主總會에서 이를 選任한다. 그러나 이 定款 第29條에서 定하는 人員數를 缺하지 아니하고 業務遂行上 支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社外理事가 辭任死亡등의 事由로 인하여 定款 第 29條

에서 定하는 員數를 缺한 境遇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後 最初로 召集되는 株主總會에서 그 要件에 充足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33條(代表理事 등의 選任) 이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代表理事會長, 代表理事社長, 副社長, 專務理事 및 常務理事 若干名을 選任할 수 있다. 第34條의 1(理事의 職務) ① 代表理事社長은 會社를 代表하고 業務를 總括한다. ② 副社長, 專務理事, 常務理事 및 理事는 社長을 補佐하고 理事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會社의 業務를 分掌執行하며 代表理事社長의 有故時에는 위 順序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34條의 2(理事의 報告義務) 理事는 會社에 顯著하게 損害를 미칠 虞가 있는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즉시 監事에게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第35條(監事の 職務) ① 監事は 이 會社의 會計와 業務를 監査한다. ② 監事は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③ 監事は 會議의 目的事項과 召集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理事會에 提出하여 臨時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監事は 그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子會社에 대하여 營業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子會社가 지체없이 報告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報告의 內容을 確認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子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다.

第36條(監事の 監査錄) 監事は 監査의 實施要領과 그 結果를 監査錄에 記載하고 그 監査를 實施한 監事が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하여야 한다.

第37條(理事會의 構成과 召集) ① 理事會는 監事로 構成하며 이 會社 業務의 重要事項을 決議한다. ② 理事會는 代表理事社長 또는 理事會에서 따로 定한 理事가 있는 때에는 그 理事가 會日 7日前에 各 理事 및 監事에게 通知하여 召集한다. 그러나 理事 및 監事 全員の 同意가 있을 때에는 召集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第38條(理事會의 決議方法) ① 理事會의 決議는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의 過半數로 한다. 다만 商法 第397條의 2(會社機會流用禁止) 및 第398條(自己去來禁止)에 該當하는 事案에 대한 理事會 決議는 理事 3분의 2 以上の 數로 한다. ② 理事會는 理事의 全部 또는 一部가 直接 會議에 出席하지 아니하고 모든 理事가 音聲을 同時에 送受信하는 通信手段에 依하여 決議에 參加하는 것을 許容할 수 있다. 이 境遇 當該 理事는 理事會에 直接 出席한 것으로 본다. ③ 理事會의 決議에 관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者は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第39條(理事會의 議事錄) 理事會의 議事に 關하여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 및 監事が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하여 本店에 備置한다.

第40條(理事 및 監事の 報酬와 退職金) ① 理事와 監事の 報酬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定한다. ② 理事와 監事の 退職金의 支給은 株主總會 決議를 거친 任員退職金支給規程에 依한다.

第41條(相談役 및 顧問) 이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相談役 또는 顧問 若干名을 둘 수 있다.

第42條(事業年度) 이 會社의 事業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43條(財務諸表와 營業報告書의 作成?備置等) ① 이 會社의 代表理事社長은 定期株主總會 會日의 6週前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 및 營業報告書를 作成하여 監事の 監査를 받아야 하며 다음 各號의 書類와 營業報告書를 定期株主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그 밖에 會社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를 表示하는 것으로서 商法施行令에서 定하는 書類 ② 이 會社가 商法施行令에서 定하는 連結財務諸表 作成對象會社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①項의 各 書類에 連結財務諸表를 包含한다. ③ 監事は 定期株主總會日의 1週前까지 監査報告書를 代表理事社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 代表理事社長은 第1項의 書類와 監査報告書를 定期株主總會 會日의 1週前부터 本社에 5年間, 그 謄本을 支店에 3年間 備置하여야 한다. ⑤ 代表理事社長은 第1項 各號의 書類에 대한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貸借對照表와 外部監査人の 監査意見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44條(利益金の 處分) 이 會社는 每事業年度 處分前利益剩餘金を 다음과 같이 處分한다.1. 利益準備金2. 其他의 法定積立金3. 配當金4. 任意積立金5. 其他의 利益剩餘金處分額

第45條(利益配當) ① 利益의 配當은 金錢, 株式 및 其他의 財産으로 할 수 있다.② 第1項의 配當은 每決算期末 現在의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 또는 登錄된 質權者에게 支給한다.

第46條(配當金支給請求權의 消滅時效) ① 配當金の 支給請求權은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 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② 第1項의 時效의 完成으로 因한 配當金은 이 會社에 歸屬한다.

附 則

1. (施行日) 이 定款은 第 55期 韓國輸出包裝定期株主總會에서 承認한 날(또는 株主總會에서 承認한 2012年 3月 23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8, 43, 45條 改正內容은 2012年 4月 15日 부터 施行한다.

1974年 6月 8日 制定

1980年 2月 28日 改定

1981年 2月 27日 改定

1985年 2月 27日 改定

1986年 2月 27日 改定

1988年 2月 27日 改定

1989年 2月 27日 改定

1990年 2月 27日 改定

1993年 3月 12日 改定

1995年 3月 10日 改定

1996年 3月 9日 改定

1997年 3月 14日 改定

1999年 3月 12日 改定

2002年 3月 8日 改定

2010年 3月 19日 改定

2012年 3月 23日 改定

任員退職金支給規程

第1條(目的) 이 規程은 定款 第40條에 依據하여 理事 및 監事에게 支給할 退職金에 關한 基本的 內容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任員의 定義) 이 規程에서 任員이라 함은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 및 監事を 말한다

第3條(退職時期) 任員의 退職時期는 任員이 現實적으로 退職한 때로 한다.

第4條(退職金産出方法) 任員의 退職金은 退職當時의 報酬總額의 1年에 대하여 2個月分을 乘하여 産出した 金額으로 한다.

第5條(在任期間의 計算) 在任期間의 計算에 있어서 在任年數에 1年未滿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月割計算하되 1月未滿의 端數는 1月로 計算한다.

第6條(特別功勞金) 在任中 特別한 功勞가 있는 任員에 대하여는 第4條에 依한 退職金以外에 株主總會의 議決을 얻어 特別功勞金을 支拂할 수 있다.

第7條(支給規程) 任員이 本人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株主總會의 解任決議 또는 法院의 解任 判決을 받아 退任하는 경우에는 이 規程에 依한 退職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第8條(改廢) 이 規程의 改廢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依한다.

附 則

1. (施行日) 이 規程은 1985年 2月 27日부터 施行한다.